

베이징 지역 공공기관 해외현지 원스톱 지원체계(“K-마루”) 구축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포스코홀딩스(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중국 베이징 지역 공공기관 해외현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정부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일원화(이하, “K-마루”)’ 추진 정책에 부응하여, 협약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동 협력거점에 집적하여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공동 협력거점’이란 베이징 지역 내에서 K-마루를 구축하기 위해 주관기관이 제공하고 입주기관이 입주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리적 공간 및 제반 인프라를 말한다.
- ② ‘주관기관’이란 공동협력 거점의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등 K-마루의 전반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총괄하는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스코차이나)을 말한다.
- ③ ‘입주기관’이란 본 협약에 따라 기존 해외사무소를 공동협력 거점으로 이전하여, 해당 입주공간의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K-마루 공동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을 제외한 협약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관별 역할) 협약기관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한다.

- ① 협약기관은 ‘코리아’ 국가 브랜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한다.
- ② 협약기관은 K-마루 내에 입주한 현지 거점의 운영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협약기관간 업무협조,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가한다.
- ③ K-마루가 조성되는 공동 협력거점의 주관기관은 K-마루가 본연의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행정지원 및 협력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K-마루의 운영) 협약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 K-마루를 운영한다.

- ① 협약기관은 기존 해외사무소를 협약기간 동안 베이징 지역 내 공동 협력 거점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한다.
- ② 협약기관은 해외사무소의 이전,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협력 거점으로의 입주 가능여부를 고려하고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협약기관 해외사무소의 소장은 해외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외사무소의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책임을 진다.
- ④ 협약기관은 수평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고유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호 존중한다.

제5조(협약기관간 K-마루 협업)

- ① 협약기관은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현지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현지 진출지원 협의체(“Team KOREA”)를 구성하고, 정기 및 수시 협의를 실시한다.
- ② 협약기관은 현지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및 현지진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비밀유지)

- ① 협약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조례 등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정부 기관 등의 적법한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는 협약기관의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한다.

제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협약기간)

-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 ②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다른 협약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 만료 전 일부 협약기관이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나머지 협약기관 간의 협약 효력은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협약은 제6조의 비밀유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해외사무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6년 5월 27일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두봉

한두봉

NRF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홍원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사장 홍문표

홍문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강경성

강경성

Korea Mar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영식

황영식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원장 강윤주

강윤주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사장 김동철

김동철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광우

남광우



Incheon Airport

사장 직무대행 김범호

김범호



한국산업은행
Korea Development Bank

회장 박상진

박상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원장 이시욱

이시욱

KIET
산업연구원

원장 권남훈

권남훈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이상중

POSCO
HOLDINGS

대표이사 사장 이주태

이주태